

공 고

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1 - 1396호
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2.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8-47호(2018.3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8-151호(2018.11.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9-124호(2019.8.30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20-27호(2020.3.20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1. 11. 12.

강 북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: 2021. 11. 12. ~ 2021. 11. 29.

나. 공람장소

1)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5)

2) 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985-2489)

다. 정비사업의 명칭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1) 위 치: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

2) 면 적: 10,335㎡

마. 사업시행자: 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
사. 정비사업의 건축계획

1) 규 모: 지상11층/지하4층, 연면적 30,977.98㎡

2) 용 도: 공동주택(아파트 20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
아. 정비기반시설 등: 도로 1,123㎡, 사회복지시설 392㎡(건축물 설치 후 기부
채납)

자. 주요 변경내역

1)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계획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최고높이 (m)	동수	층수
기정	392.00	235.10	727.41	59.97	106.15	8.80	1	지하2 /지상2
변경	392.00	233.67	1,002.38	59.60	199.48	19.00	1	지하1 /지상4

2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계획: 수량 및 재료 변경

차. 관계도서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)

기 타

7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인사발령(휴직)

[발령 제199호]

시행일자: 2021. 11. 12.자

연번	성 명	발령사항	현 직	
			부 서	직 급
1	이효기	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복직을 명함 행정관리국 정보화지원과 근무를 명함	공원 녹지과	지방공업 서기보 (전기)